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2015. 03.01 제정

2016. 03.01 개정

2016. 09.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 활동 지원비) 별표1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학술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소속 표시) 학술활동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졸업생은 학회 발표나 논문 게재 시 본교 소속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동아리 활동 지원비) 별표2의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동아리 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술활동 지원비 기준표

구분	국내학회 등록비	국내 학회 Poster Session	국외 학회 발표	학술지 논문게재
대상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재학생, 졸업생
지원 내용	국내 학회 등록비	문구 구입, 복사, 인쇄 등 준비 비용	팀당 지원	학회에 게재료 명목으로 본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
지원 금액	학기당 일인 50,000원	회당 50,000원/팀	아시아권 300,000원/팀 그 외 600,000원/팀	
제출 서류	1)학회 발행 영수증 원본 2)통장 사본	1) Poster Session 증빙서류(proceedin gs 사본, certificate 등) 2) 영수증 원본 3) 통장 사본	1) 국외 학회 발표 지원비 신청서 2) 국외 학회 발표 보고서 3) 학회 발표 증빙 서류(proceedings 사본, certificate 등) 4) 영수증 원본 5) 통장 사본	1) 학회 발행 영수증 2) 학회지 목차 사본 3) 논문 사본 4) 통장 사본
한도	학기당 총액 50,000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재학 기간 중 1회	횟수 제한 없음
비고	참가 또는 발표 등록 모두 해당		현지 학회 등록비는 해당없음	본교 소속으로 게재한 경우에 한하며 논문심사비는 본인 부담임.
			본교 교원과 공동발표자로 발표하거나 공 동저자로 게재한 경우 교원분(1/n)은 지급하지 않음	

<별표2>

동아리 활동 지원비 기준표

구분		내역	비고
등록	시기	학기초 (3월, 9월)	
	제출서류	동아리등록신고서	
지원비 신청	시기	학기말 (1월, 7월)	
	제출서류	동아리활동보고서, 영수증, 통장 사본	
지원 내용		학생 5인까지는 100,000원 정액 그 외 1인당 10,000원 추가	